

리스會計處理基準의 中立性 檢討^{*}

- An Investigation on the Neutrality in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or Leasing Transactions -

鄭 基 英^{**} · 李 重 熙^{***}

< 目 次 >	
I. 序 論	2. 리스去來의 財務報告
II. 會計基準의 中立性과 經濟規制理論	IV. 리스會計處理基準의 中立性 檢討
1. 會計基準의 中立性	1. 檢討方法과 基準의 制定方向
2. 中立性과 經濟規制理論	2. 리스分類基準의 強化
III. 리스의 特性과 財務報告	V. 結 論
1. 리스의 特性	

I . 序 論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및 기계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73년에 法律 제 2664 호로 「施設貸與産業育成法」을 제정하고 리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 이 논문은 1986년도 한국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정리한 것임
 ** 啓明大學校 經營大學 副教授
 *** 啓明大學校 經營大學 助教授
 · 학회 원고접수일 9월 6일

그 결과로 리스계약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이익율을 실현해 왔다. 리스계약액을 보면 1983년도에는 1982년에 비해 무려 118.8%나 증가한 것을 비롯 198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68.8% 증가하였고¹⁾ 1985년도의 경우 한해동안 체결된 계약액이 1조 2천 61억원(취득원가기준으로는 9천 45억원)이나 된다.²⁾ 한편 1984년 7월부터 1985년 6월말까지의 영업성과를 보면 1985년말에 설립된 3개의 리스전업회사를 제외한 11개 리스회사중에서 7개 리스회사가 當期純利益 100大企業에 포함될 정도로 높은 이익율을 나타내고 있다.³⁾

이와 같이 신중산업으로서 괄목할만하게 성장한 리스산업은 리스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會計處理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리스거래가 물건의 임대차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中長期 設備金融의 성격을 가진 物的金融(physical finance)이기 때문에『企業會計基準』을 적용할 경우 리스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올바르게 表現할 수가 없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貸貸借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貸貸用役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은 수입임대료를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임차인은 지급임대료를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金融의 경우 貸與者는 金融用役의 代價인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借入者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貸貸借形式으로 이루어지면서 設備金融의 성격을 가진 리스거래의 경우 현행 「企業會計基準」만을 적용한다면 경제적 실질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기 전에는 9개 리스회사중 1개 회사를 제외한 8개 리스회사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스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관계없이 運用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었다.⁴⁾ 이는 리스거래에 관한 회계정보가 表現의 忠實性(representational faithfulness)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리스거래에 대한 통일적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事象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檢證可能性(verifiability)과 比較可能性(comparability)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比較可能性은 目的適合性(relevance)과도 관계되므로 회계정보의 有用性이란 측면에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회계

1) 韓國日報, 1985. 8.16 제 4면

2) 資料, 리스協會, 1986.

3) 朝鮮日報, 1985.10. 3 제 2면

4) 三逸會計法人·棟映會計法人, 리스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1983.7. p.38.

기준의 制定代理機關인 證券管理委員會는 1985년 1월 1일자로 「리스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여 동일자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目的適合하고 信賴性을 갖춘 財務情報의 제공은 실증적 경제학의 목표인 效率性(efficiency)과 公平性(equity)의 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은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회소자원의 效率的 配分에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中立的인 입장에서 제정된 회계기준은 規制의 公平性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財務情報의 제공을 위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會計基準의 制定時에는 效率性和 公平性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會計基準이 制定된 후에도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稿는 「리스회계처리기준」이 公平性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會計基準의 公平性을 검토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本稿에서는 會計基準의 中立性(neutrality)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근거는 會計基準의 制定 및 施行이 經濟規制(economic regulation)의 하나이며, 中立的이지 못한 입장에서 制定·施行될 경우 특정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현금흐름을 초래함으로써 規制의 公平性을 상실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會計基準의 中立性을 검토하기 위해 經濟規制理論 특히 포획이론(capture theory)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會計基準制定에 관련된 배경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誘因시스템 모델의 적용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本稿는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초기의 포획이론을 적용하였다. 이와 아울러 誘因시스템 모델의 적용을 위한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Ⅱ. 會計基準의 中立性和 經濟規制理論

1. 會計基準의 中立性

(1) 中立性的 意義와 重要性⁵⁾

中立性이란 會計基準의 제정 또는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관심을 회계처리의 결과인 情報

5)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2 -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Stamford, Conn., 1980. pars. 98~100.

의 目的適合性과 信賴性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러가지 대체가능한 회계처리방법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 미리 예정된 결과(predetermined result)에 대해 不偏의일때 中立의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中立性이란 事전에 미리 정해놓은 결과를 얻거나 특정한 행동양식을 유도하려는 偏倚(bias)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中立性은 情報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령 체중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은밀하게 저울의 눈금을 속이거나 자동차의 속도제한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속도계를 인위적으로 구조변경한다고 생각해 보자. 또한 어떤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 운동경기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어떤 학생을 졸업시키기 위해 시험점수를 임의로 조작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사실을 이해관계자들이 알거나 아니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측정결과를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情報의 有用性은 사라지고 情報의 산출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대한 會計情報도 그 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만약 偏倚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그 情報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會計情報는 가능한 한 경제활동을 충실하게 보고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야 한다.

會計에 있어서의 中立性은 會計基準를 적용하여 財務報告書를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會計基準를 제정하는 制定代理機關에게 보다 큰 의미가 있다. 만약 會計基準의 制定代理機關이 어느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의도를 會計基準에 반영한다면 그러한 基準은 中立性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회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規制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中立性과 國家政策目標

우리나라의 施設貸與產業育成法은 리스산업을 전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施設貸與產業育成法」 제1조). 그러나 同法에 의하면 리스회사에 많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전진한 육성”이라는 의미를 “정책적 지원”과 혼동하고 있다. 결국 同法에는 리스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리스회계처리기준」도 리스산업에 유리하도록 制定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리스산업에 유리하도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⁶⁾

6) Ibid., pars., 103~104.

첫째, 국가정책의 목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연탄값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油類消費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후손의 편익을 위해 석탄자원을 보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개편됨에 따라 정책방향이나 정책이 바뀌게 될 것이다. 만약 정책방향의 변경에 따라 회계기준을 개정한다면, 경제적 실질을 적정히 반영해야 한다는 회계적 명제는 무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會計情報가 중립적이어야 정책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정책지침으로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정치적인 바람(political wind)이 바뀔 때마다 그 바람에 맞추어 會計基準制定의 방향을 수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치적으로 동기유발된 基準은 빠른 시일내에 信用을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리스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정책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관리위원회는 리스산업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리스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 실질의 측정을 왜곡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유리한 경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증권관리위원회는 會計基準이 제정된 후의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基準制定時에 생각하지 못했던 결점이 나타난다면 즉시 基準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中立性和 經濟規制理論

(1) 會計基準의 性格과 經濟規制理論

자본주의하에서의 市場은 경제계의 희소자원을 배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여러가지 방법과 목적으로 市場의 배분과정을 간섭하게 된다. 조세징수, 재화와 용역의 구매, 기업활동의 규제, 보조금의 지급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있고, 보다 광범위한 조세정책, 금융 및 재정정책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이와 같은 간섭을 經濟規制(economic regulation)라고 한다.

會計基準은 경제활동의 실질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會計基準이 특정의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會計基準은 市場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會計基準을 적용하여 산출한 會計情報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會計基準도 경제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經濟規制의 하나로 볼 수 있다.

會計基準을 經濟規制라고 본다면 經濟規制理論을 적용하여 中立性을 검토할 수 있다. 經濟規制理論은 규제의 원천, 규제의 효과, 규제과정, 관료주의적 행동과 규제대리기관의 행동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규제의 설명이 시도되고 있다.⁷⁾ 일반적인 經濟規制理論에는 公共利害關係理論 (public interest theory)과 포획이론 (capture theory)이 있으며 이들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

公共利害關係理論은 規制가 주로 公共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목적에 반응하여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전개된다. 즉 經濟市場을 그대로 두면 극도로 허약해지며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쉽고 정부규제의 원가가 사실상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市場의 現狀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공평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공수요에 따라 규제가 나타난다고 본다.

포획이론은 집단구성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이해관계자집단의 수요에 반응하여 규제가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포획이론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에는 다시 집단이해관계이론 (group interest theory), 경제적이론 (economic theory), 효용극대화이론 (utility-maximizing theory) 등이 있으나 다음에 살펴 볼 誘因시스템 모델에 통합된다.

(2) 誘因시스템 모델 ⁹⁾

誘因시스템 모델 (incentive systems model)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온 規制理論과 정책결정과정을 통합한 모델이다. 여기서 誘因이란 誘因提供者와 誘因受信者 사이에 誘因報償 (또는 벌칙, 즉 負의 報償)이 이전됨으로써 誘因受信者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관계로 정의한다. 誘因提供者는 誘因受信者와 代理關係 (agency relationship)를 설정하려고 시도할 것이므로 誘因시스템 모델을 이용할 경우 모델화되는 規制關係의 論理的 결과는 代理人-主人關係 (agent-principal relationship)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主人은 誘因提供者이며 代理人은 誘因受信者이다. 만약 規制되는 산업의 선호와 일치하는 의사결정과 행

7) Barry M. Mitnik,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0, pp. 79~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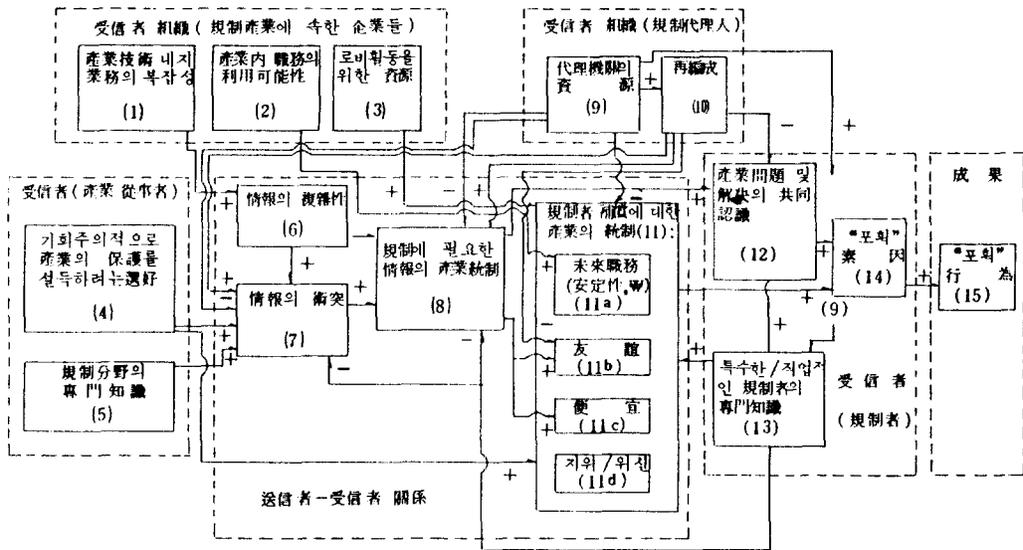
8) Richard A. Posner,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5, No2 (Autumn 1974), pp. 335~358.

9) Barry M. Mitnik, op. cit., pp. 91~96.

등을 하도록 하는 素因(predisposition)이 개발됨으로써 規制者가 産業의 代理人이 된다면 이를 포획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모델은 규제되는 산업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대리기관의 구성원인 規制者들을 포획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그림〉 部分的인 誘因시스템 모델



* 화살표 및 부호의 의미: $\boxed{A} \xrightarrow{+} \boxed{B}$ 일 경우, A가 크면 클수록 B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boxed{A} \xrightarrow{-} \boxed{B}$ 일 경우, A가 크면 클수록 B가 적다는 것을 의미함.

이 모델에서는 情報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신자 조직의 특성중의 하나인 規制되는 산업의 기술 내지 업무가 복잡하다는 것 (1)은 規制意思決定을 하기위해 필요한 情報가 복잡하다는 것 (6)을 의미하며, 情報가 복잡하다는 것(6)은 정보충돌(7)의 원인이 되고, 동시에 規制에 필요한 情報の 産業統制(8)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기회주의적으로 자기 산업의 이익을 위해 規制者를 설득하려는 선호(4)와 規制되는 산업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5)도 정보충돌(7)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情報衝突(information impactness)이란 어떤 상황의 진실을 規制되는 산업을 알고 있지만 規制者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代價를 規制되는 産業에 지불해야 하는 條件을 말한다.¹⁰⁾ 이러한 정보충돌(7)은 規制

10) Oliver E. Williamson, Michael L. Wachter and Jeffrey E. Harris, "Understanding the Employment Relation: The Analysis of Idiosyncratic Exchange,"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6. No.1. (Spring 1975), pp. 250 ~ 278.

에 필요한 정보의 산업통제를 증대시키고, 規制에 필요한 정보의 산업통제(8)는 산업의 당면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해 規制者和 산업사이의 인식을 같게하는 共同認識(12)을 유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友誼(11 b), 便宜(11c) 등과 같은 規制者 報償에 대한 산업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情報統制를 통하여 產業은 規制者들의 規制課業을 산업에 유리하도록 인식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으며 情報供給을 통하여 規制者에게 호의를 베풀고 직무수행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規制產業이 規制者의 작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便宜(11c)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產業의 구성원과 規制代理人 사이의 友誼(11b)를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規制者가 규제대리기관을 떠난 후에 그에게 안전하고 봉급이 많은 직무(11a)를 산업이 제공한다면가 로비활동과 規制者와의 개별접촉에 필요한 資源(3)으로 規制者 報償에 대해 產業이 統制(11) 할 수 있게 된다.

規制者 報償에 대한 산업통제(11)와 산업의 당면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共同認識(12)은 規制되는 산업이 희망하는 規制方向과 동일한 意思決定과 행동을 하게되는 規制者의 素因(14)과 관련되며, 이러한 素因은 산업에 유리한 행동, 다시 말해 포획행위(15)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규제대리기관의 資源(9) 예를 들어 풍부한 예산과 인적자원, 規制者가 당면한 문제의 연구를 위한 投資, 감사자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충돌(7)이 적어지고 規制에 필요한 情報의 산업통제(8)도 적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資源(9)이 풍부할수록 規制者 報償에 대한 산업통제(11)도 더욱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대리기관의 자원이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델을 실증적 검토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① 規制者들의 배경은 어떠한가? 또는 規制者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專門職業에 종사하였는가? (변수 13 과 관련)

② 規制者들은 규제대리기관을 떠난 후에 어떤 직장으로 옮기는가? 그리고 왜 떠나는가? (변수 11a 와 관련)

③ 규제대리기관의 資源, 특히 規制者의 봉급과 관련된 資源은 적절한가? (변수 9 와 11 과 관련)

④ 규제대리기관의 조직재편성율(변수 10)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재편성이 情報에 대한 산업통제(변수 8) 및 규제자보상에 대한 산업통제(변수 11)를 촉진하는가 아니면 억제하는가?

本稿에서는 위에서 고찰한 誘因시스템 모델을 적용하여 「리스會計處理基準」의 中立性を 검

토하려고 노력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배경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모델의 적용은 本稿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 연구를 위한 자료만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Ⅲ. 리스의 特性和 財務報告

1. 리스의 特性

(1) 리스의 意義

리스의 特性에 대한 이해는 리스去來의 財務報告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리스物件의 所有權에 부수적인 모든 便益과 危險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따라 리스去來의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고, 財務報告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존중하기 때문에 리스去來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財務會計基準審議會 (FASB)는 「財務會計概念에 관한 제 13 보고서」에서 리스 (lease)란 “계약에 명시된 일정기간동안 재산, 공장 또는 장비, 즉 토지와 상각가능자산의 使用權을 이전하는 약정”이라고 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¹¹⁾

우리나라의 「리스會計處理基準」 제 2 조에 의하면 리스去來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施設貸與去來의 당사자인 리스회사 (시설대여회사)가 리스이용자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받고, 계약기간중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 2 조에 의하면 리스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物的金融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리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책임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

11)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3 - *Accounting for leases*, November 1976, par. 1

② 리스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49 조에 의한 내용년수가 5년이하인 물건은 내용년수의 $\frac{70}{100}$ 5년을 초과하는 물건은 $\frac{60}{100}$ 이상을 말하므로(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최소한 법인세법상 내용년수의 $\frac{60}{10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리스로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거래이어야 하므로 일시에 일정대가를 지급받는 貸與去來는 리스가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 4 조).

④ 리스란 리스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物的金融이다. 따라서 리스기간 종료후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존속하든지 아니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

(2) 貸借 · 割賦賣買와의 비교

貸借의 경우 계약의 대상이 되는 物件을 貸借人의 資産으로 計上하지만 割賦賣買의 경우 계약의 대상이 되는 物件을 買受人의 資産으로 計上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리스의 경우 보통의 貸借과 유사하면서 다른 여러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民法上の 貸借의 일종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貸借와는 다른 독립적인 非典型契約으로 볼 것인가의 견해가 나누어 질 수 있다. 또한 買受條件附리스의 경우에는 賣買와 貸借의 혼합된 성질을 머무게 된다.¹²⁾ 會計處理上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 物件의 所有權에 부수적인 危險과 便益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所有權에 부수적인 거의 모든 危險과 便益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될 경우 리스物件을 리스이용자의 資産으로 計上하지만, 이러한 危險과 便益이 리스會社에 존속한다면 리스회사의 資産으로 計上하게 된다. 前者의 경우에는 割賦賣買에 가깝다고 간주하고 後者の 경우에는 貸借에 가깝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리스物件의 所有權에 부수적인 危險과 便益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貸借 割賦賣買와 비교하면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貸借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리스去來는 貸借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契約의 當事者, 계약대상물건, 계약기간, 借賃의 결정과 지급시기, 리스등의 表示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民法」과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이 서로 다르다. 實定法上の 이러한 차이중에서

12) 鄭熙喆, “리스契約에 관한 研究”, 「法學」(서울대학교), 제 20 권 제 2 호(1980) p.72

도 중요한 것은 物件의 유지·관리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賃貸借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리스의 경우 리스 物件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

리스와 임대차의 차이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리스회사가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여 민법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임대차의 경우 賃借物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滅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使用, 收益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借賃의 減額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解止할 수 있다(「民法」 제 627 조). 그러나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의 종료시까지 계약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과실없이 滅失 또는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과 위험까지도 리스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대부분의 리스회사들이 거래약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한다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民法」 제 627 조가 강행규정이며, 이와 같은 리스회사의 약관이 강행규정에 위배되고 리스이용자에게 가혹하므로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리스의 본질이 金融에 있는 점, 경제적으로 대등한 기업간의 상행위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추가됨으로써 리스로가 보통의 賃貸借에 비하여 싸게 되어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¹³⁾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도 리스회사는 免責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賃貸借의 경우 유상계약임을 이유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¹⁴⁾ 그러나 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物件의 규격, 성능, 기능, 사양 및 매도인을 선정하고 구입절차를 수행하며, 리스物件을 직접 심사 및 인수한다는 이유로 리스會社는 하자담보책임을 免한다는 조건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目的物 또는 그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수량부족, 일부별실등의 경우에도 리스회사에게 리스료의 減額請求權, 契約解止權, 損害賠償請求權 등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리스이용자는 매도인에게 損害賠償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販賣리스會社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만 리스전업회사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¹⁵⁾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전업회사가 대

13) 上掲論文, p. 77.

14) 郭潤直著, 債權各論, 서울, 博英社, 1984, p. 323.

15) 閔丙國,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上)”, 法律新聞, 1984. 9.24 제 4면.

부분이며 리스점업회사라 하더라도 販賣리스회사는 없다.

지금까지의 리스와 賃貸借의 비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리스去來는 리스物件의 소유권에 부수적인 거의 모든 危險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있다.

물건에 대한 所有權의 이전과 目的物의 使用·收益權의 측면에서 보면 리스와 割賦賣買는 유사한 점이 많다. 즉 割賦賣買의 경우 특약이 없는한 매도인은 目的物의 占有를 買受人에게 이전하고 買受人이 目的物을 使用·收益하게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買受人은 目的物에 대한 占有權과 使用·收益權을 가지며 占有者로서의 보호를 받지만 目的物에 대한 보관상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리스와 같다. 또한 할부매매의 매수인은 占有權과 使用·收益權을 가지는 대신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代金を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대금의 지급을 게을리 하는 경우의 제재, 예를 들면 매매계약의 무효, 殘代金에 대한 일시청구, 일정한 손해배상등의 특약이 있다면 이는 法的으로 有效하다. 그리고 買受人이 占有하는 동안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目的物이 滅失한 경우 所有權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買受人의 대금지급의무는 消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¹⁶⁾ 目的物에 대하여 지출되는 조세공과, 수선비용등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買受人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리스계약은 할부매매와 유사하다. 앞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의 리스계약과 같이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중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리스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경우 所有權 取得에 대한 期待權 등을 제외하면 할부매매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리스去來의 財務報告

(1) 리스去來의 財務報告에 대한 論議

리스去來의 會計處理 및 財務報告에 대한 주요 논쟁은 리스物件을 리스이용자의 資產으로 資本化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資本化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다.¹⁷⁾

① 資本化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

리스資產을 리스이용자의 대차대조표에 資產으로 計上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의 論據는 다

16) 郭潤直, 前掲書, pp. 256 ~ 263.

17) 金星基 著, 現代中級會計, 서울, 茶山出版社, 1985, pp. 548 ~ 549 Eldon S. Hendriken, *Accounting Theory*, Richard D. Irwin Inc., 1982, pp. 363 ~ 367.

음과 같다.

첫째, 은행용자에 의한 설비조달과는 달리, 리스契約은 구매계약이나 고용계약과 같은 未履行契約(executory contract)에 불과하다. 즉 리스계약이란 계약에 의해 리스회사에게는 리스物件의 使用權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고 리스이용자에게는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未履行契約이다. 그리고 현행의 회계처리상 이러한 未履行契約은 資本化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리스物件을 리스이용자가 資本化해서는 안된다.

둘째,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貸借對照表에 계상하려면 동시에 저액의 負債를 보고해야하므로 負債比率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리스이용자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物件을 자본화하지 않음으로써 薄外金融(off-the-balance-sheet-financing)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리스物件에 대한 所有權이 리스회사에 있는 것이지 리스이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리스物件을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보고한다면 情報利用者を 誤導하게 될 것이다.

② 資本化해야 한다는 주장

리스物件을 리스이용자의 資産으로 計上해야 한다는 주장의 論據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取消不能의 長期리스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資産을 할부구입한 것과 같다. 따라서 資産의 할부구입대금을 資本化한다면 할부구입과 유사한 리스도 資本化해야 한다.

둘째, 다른 기업의 財務諸表와의 比較可能性을 높이기 위해서도 리스物件을 資本化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장기리스계약에 의하여 설비자산을 조달한 기업이나 장기부채로 설비자산을 구입한 기업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 기업사이의 比較可能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스資産을 資本化하여야 한다.

결국 리스物件을 리스이용자가 資本化해야 한다는 입장은 리스계약에 의한 자원조달의 성격이 할부구입 또는 借入에 의한 자원조달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 리스會計處理基準의 입장

우리나라의 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리스물건의 所有權에 부수적인 모든 危險과 便益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즉 金融리스(financing lease)의 경우에는 리스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리스로 총액에서 리스실행일 이후에 속하는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리스이용자의 財務諸表에 資産과 負債로 각각 計上한다. 그리고 리스이용자는 리스資産에 대하여 다른 所有資産과 동일한 방법으로 減價償却한다(基準 제16조). 이러한 기준의 입장은 所有權에 부수적인 危險과 便益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될 경우 경제적 실질이란 측면에서 장기금융에 의한 자원의 구입 또는 할부구입과 유사하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危險과 便益의 대부분이 리스회사에 존속하는 리스, 즉 運用리스(operating lease)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貨貸借에 가깝기 때문에 리스物件을 리스회사의 資産으로 計上한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財産의 所有權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모든 便益과 危險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資産의 취득과 債務의 발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리스회사는 販賣 또는 融資와 같이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會計基準을 제정하였다.¹⁸⁾

그러나 所有權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모든 便益과 危險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리스란 어떤 계약이어야 하는가의 판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살펴 볼 것이다.

Ⅳ. 리스會計處理基準의 中立性 檢討

1. 檢討方法和 基準의 制定方向

(1) 檢討方法

제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經濟規制理論을 적용하면 회계처리기준의 中立性을 검토할 수 있다. 經濟規制理論 중에서도 誘因시스템모형을 적용하면 經濟規制가 中立的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제정에 관한 배경정보, 예를 들면 規制者의 이력, 이직율, 이직 사유, 규제기관의 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本稿는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포획이론을 적용하려고 한다.

18)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 *Accounting for leases*, November 1976, par.60.

Bentley, Truman 등과 같은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規制代理機關이 규제되는 산업의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規制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특정 이해관계자집단을 찾아내고 이러한 이해관계자집단의 노력과 規制代理機關의 설립 당시의 목적달성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규제받는 집단의 규제기관에 대한 포획행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규제기관의 당초목적이 규제결과에 왜곡되어 나타난다면 규제기관이 포획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리스회계처리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집단은 리스산업, 리스이용자, 정부등이다. 특수업종에 대한 회계기준의 제정은 집중된 편익 - 분산된 원가 (concentrated benefits - diffused costs) 를 초래하는 규제정책에 해당하며, 便益의 수혜집단으로서의 특정산업은 성공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유도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리스이용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여 규제대리기관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지만, 리스산업은 규제대리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포획하려 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2) 리스회계처리기준의 제정방향

정치학자들에 의해 전개된 포획이론을 적용하여 「리스회계처리기준」의 中立性을 검토하려면 會計基準의 制定目的이 會計基準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관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리스회계처리기준」의 제정방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리스산업은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실무상의 혼란과 세무당국과의 의견차이로 인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하여 「리스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연구를 삼일·동영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의뢰받은 연구용역단은 1983년 7월에 「리스會計處理基準의 制定에 관한 研究報告書」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會計基準의 제정대리기관인 證券管理委員會는 연구용역단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리스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리스회계처리기준」의 실질적인 제정대리기관은 리스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報告書에는 基準의 制定方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⁰⁾

19) Barry M. Mitnick, *op. cit.*, p. 86.

20) 三逸會計法人·棟映會計法人, 리스會計處理基準의 制定에 관한 研究報告書, 1983. 7. pp. 93 ~ 98.

- ①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施設貸與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준제정
- ② 리스거래의 特性과 經濟的 實質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제정
- ③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개념하에서 수미일관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제정
- ④ 미국의 회계처리에를 널리 참조하되 한국의 현실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 ⑤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의 특성을 살려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형평이 유지되는 기준 제정
- 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회계처리방법을 가급적 일원화하는 기준제정²¹⁾
- ⑦ 이해관계자의 利害調整機能을 담당할 수 있는 기준제정
- ⑧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경과규정

이러한 制定方向이 「리스회계처리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中立性의 유지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는 위의 제정방향중에서 ②와 ⑦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의 제정방향은 中立성과 가장 큰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2. 리스分類基準의 強化

(1) 經濟的 實質의 歪曲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리스거래는 임대차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設備金融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物件의 法的 所有權보다는 所有權에 부수적인 모든 危險과 便益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고려하여 財務報告를 하게 된다. 그러나 所有權에 부수적인 모든 危險과 便益의 실질적인 이전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리스기간중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契約 禁止禁止條件이 부과된 리스로서 다음의 조건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所有權에 부수적

21) 「리스會計處理基準」의 制定 및 施行日인 1985년 1월 1일자로 改正된 「法人稅法基本通則」에는 리스去來의 세무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리스회사의 運用리스資產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거의 일원화되어 있다.

國稅廳, 法人稅法基本通則, 2-3-56...9 金融리스와 運用리스의 區分

2-3-57...9 리스의 會計處理

인 모든 危險과 便益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고 간주한다(基準 제 4 조).

- ①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物件의 所有權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 ② 리스物件의 廉價購買選擇權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 ③ 리스기간이 리스物件의 經濟的 耐用年數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²²⁾

- ① 리스기간의 종료시까지 리스資產의 所有權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 ② 리스계약에 廉價購買選擇權(bargain purchase option)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③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추정된 經濟的 耐用年數의 75% 이상인 경우
- ④ 리스개시일 현재, 最少리스료지급액(minimum lease payments)의 현재가치가 리스資產 공정가치의 90%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의 리스분류기준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리스거래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분류기준의 강화)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첫번째 분류기준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가 동일하다.

두번째 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미국보다 포괄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모두 리스物件의 廉價購買選擇權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를 분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廉價購買選擇權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미국의 기준에서 사용하는 廉價購買選擇權이란 리스이용자가 자기의 선택에 의해 리스물건을 廉價購買選擇權 행사가능일의 公正한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購買할 수 있는 권리만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廉價로 購買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廉價로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세번째 분류기준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즉 미국은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년수의 75%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연구용역단은 우리나라의 분류기준을 이와 같이 다르게 규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³⁾

- ① 75%라는 자의적 수치에 대한 정당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정되기 어렵고,

22)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 *Accounting for Leases*, November 1976, par. 7.

23) 三逸·棟映會計法人, 前揭報告書, p. 106.

② 기술진보에 따라 설비를 급격히 교체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耐用年數의 75%를 초과하더라도 리스자산의 殘存價額이 중요하므로 所有權에 부수적인 모든 便益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이유를 검토하여 보자

첫번째 이유에서는 자의적인 수치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會計基準의 制定時에 자의적인 수치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企業會計基準」 제 92 조와 제 94 조의 유가증권평가시의 $\frac{30}{100}$, 제 103 조의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를 계상할 때의 $\frac{5}{100}$, 대차대조표 과목분류시의 $\frac{2}{100}$, 손익계산서 과목분류시의 $\frac{20}{100}$ 등은 모두 자의적인 수치이다.

두번째 이유에서 殘存價額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리스기간의 초기에는 리스物件이 가장 최근의 기술과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진부화되고 마멸된 후기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使用便益(use benefit)을 창출할 수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후의 추정되는 使用可能便益의 殘存部分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리스실행일에서의 리스物件의 價値에 비해 상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²⁴⁾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리스거래의 경우 미국보다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物件은 리스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리스이용자가 특별히 선정한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은 것이므로 리스회사나 제 3자의 경우보다 당해 리스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편익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중고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별도로 분배에 의한 회수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리스로를 통해 회수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분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은 극단적인 예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스기간이 리스物件의 經濟的 耐用年數와 동일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리스物件의 使用可能便益은 리스기간중에 리스이용자가 모두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分類基準은 使用可能便益의 중요한 부분이 리스회사에 존속한다고 간주하는 모순을 갖게 된다.

따라서 리스기간이 耐用年數보다 짧다고 하더라도 리스物件의 經濟的 耐用年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리스이용자는 본질적으로 所有權에 부수적인 거의 모든 危險과 便益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여기서 리스기간에 대해 “상당한 부분”이란 임의성을 띠고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經濟的 耐用年數의 75~80% 이상이면 “상당한 부분”

24) FASB, op. cit., par. 75.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²⁵⁾

미국의 리스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세번째 분류기준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없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그의 투자액 및 공정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된 경우 所有權에 부수적인 모든 危險과 便益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연구용역단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⁶⁾

① 리스회사가 투자액과 공정한 수익을 회수하였는지의 여부는 회수액의 현가계산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가계산에 따른 적절한 할인율의 결정, 공정한 수익에 대한 판단등의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會計規定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경우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②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이 購買者市場이므로 리스회사가 대부분의 투자액을 회수하도록 리스료가 책정되었다면 리스자산의 殘存價額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후의 리스物件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없으며 殘存價値에 의한 예상수익을 감안하여 다른 설비금융에 비하여 담보비율이 낮고 신용에 의한 100%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리스료 회수액이 취득원가의 대부분을 회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所有에 따른 便益을 대부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세번째 분류기준을 검토할때에 제시했던 이유와 리스계약의 체결시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현가계산내역인 상환계획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특히 리스에 의한 설비금융이 購買者市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단의 논리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잔존가치가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회사에 귀속될 경우 리스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때에도 리스회사는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기대수익율을 확보할 것이다. 따라서 세가지 분류기준이외에 公正市場價値와 관련된 분류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리스회계처리기준」의 리스분류기준의 강화는 리스거래의 경제적 特性과 實質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의 제정이라는 연구용역단의 당초의 방향이 歪曲되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金星基, 前掲書, p. 567.

26) 三逸會計法人·棟映會計法人, 前掲報告書, p. 107.

(2) 리스회사에 유리한 현금흐름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회계처리에 관해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입장이 거의 같기 때문에 리스분류기준의 강화는 리스회사의 利害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리스분류기준을 강화시켜 리스거래의 대부분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도록 할 경우 리스회사에게 유리한 현금흐름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의 리스거래를 분석하여 리스회사에게 유리한 현금흐름을 초래하는 결과를 살펴 보기로 한다.

* 리스거래의 사례

- 리스物件의 取得原價 : ₩ 99,000,000
- 리스실행일 : 1986. 1. 8
- 리스종료일 : 1992. 7. 8
- 리스기간 : 78개월
- 리스物件의 經濟的 耐用年數 : 7년
- 리스요율 및 할인율 : 15.5%
- 리스료 지급조건 : 1개월 선불 및 완불조건 (full-payout lease)

• 리스기간의 종료후에도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으며 재리스원금은 취득원가의 10% (그러나 리스이용자는 재리스하지 않고 리스물건을 반환하는 것으로 가정함) 위와 같은 리스거래는 리스기간이 耐用年數의 75% 이상에 해당하므로 미국의 경우에는 金融리스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運用리스가 된다.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가 모두 유리한 현금흐름을 선호한다고 가정하고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法人稅效果 (法人稅는 방위세·주민세를 포함)를 계산하면 比較表(I)과 比較表(II)와 같다.

比較표(I)에 나타난 바와 같이 法人稅率이 30%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위의 리스거래를 運用리스로 처리한다면 運用리스료의 費用(損金) 認定으로 인해 ₩28,141,800의 法人稅效果가 나타난다. 그러나 金融리스로 처리한다면 金融리스이자, 감가상각비등의 費用(損金) 認定으로 인해 ₩30,942,535의 法人稅效果가 나타난다. 따라서 法人稅移延에 의한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리스이용자의 경우 運用리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金融리스로 처리하는 것이 ₩2,800,735만큼 유리하다. 다시 말하면 리스이용자의 경우 金融리스나 運用리스중 어느 것으로 회계처리 하더라도 리스기간중에 계상되는 총비용은 동일하지만, 金融리스로 처리하는 것이 運用리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초기에 많은 비용을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法人稅의 現在價値를 고려한다면 ₩2,800,735만큼 유리하게 된다. 그리고 리스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運用리스로 처

리스거래의 법인세효과 비교표(I) - 법인세율 30%

(단위: 원)

연도	운용 리스			금융 리스			리스		
	비용	법인세 효과		비용	리	용	법인세 효과		
		금용리스료	금액				현재	금액	현재
1986	23,952,000	7,185,600	6,221,299	13,233,796	27,720,000	40,953,796	12,286,139	10,621,765	
1987	23,952,000	7,185,600	5,386,406	12,921,861	19,958,400	32,880,261	9,864,078	7,394,222	
1988	23,952,000	7,185,600	4,663,555	11,085,346	14,370,048	25,455,394	7,636,618	4,956,272	
1989	23,952,000	7,185,600	4,037,710	8,943,051	10,346,435	19,289,486	5,786,846	3,251,726	
1990	23,952,000	7,185,600	3,495,853	6,444,068	7,449,433	13,893,501	4,168,050	2,027,790	
1991	23,952,000	7,185,600	3,026,712	3,529,003	5,363,592	8,892,595	2,667,779	1,123,720	
1992	11,976,000	3,592,800	1,310,265	530,875	13,792,092	14,322,967	4,296,890	1,567,040	
계	155,688,000	46,706,400	28,141,800	56,688,000	99,000,000	155,688,000	46,706,400	30,942,535	

리스거레의 법인세효과 비교표(III)

(단위: 원)

연도	〈리스이용자의 경우〉						법인이율이 40%인 경우					
	법인이율이 20%인 경우			법인이율이 40%인 경우			법인이율이 20%인 경우			법인이율이 40%인 경우		
	운용액	원가	현가	법인세액	원가	현가	운용액	원가	현가	법인세액	원가	현가
1986	4,790,400	4,147,532	8,190,759	7,091,566	9,580,800	8,295,065	16,381,518	14,183,132	9,580,800	7,181,874	13,152,104	9,858,964
1987	4,790,400	3,590,937	6,576,052	4,929,482	9,580,800	9,580,800	10,182,158	6,608,363	9,580,800	3,304,181	7,715,795	4,335,635
1988	4,790,400	3,109,037	5,091,079	3,304,181	9,580,800	9,580,800	4,661,137	2,703,720	9,580,800	5,383,613	5,557,400	1,498,292
1989	4,790,400	2,691,807	3,857,897	2,167,817	9,580,800	9,580,800	4,035,616	1,498,292	9,580,800	4,035,616	3,557,038	2,089,388
1990	4,790,400	2,330,568	2,778,700	1,351,860	9,580,800	9,580,800	1,747,020	41,277,494	9,580,800	4,790,400	5,729,187	2,089,388
1991	4,790,400	2,017,808	1,778,519	749,146	9,580,800	9,580,800	62,275,200	37,522,398	9,580,800	4,790,400	62,275,200	41,277,494
1992	2,395,200	873,510	2,864,594	1,044,694	4,790,400	4,790,400	3,755,096	3.79%	4,790,400	4,790,400	3,755,096	3.79%
계	31,137,600	18,761,199	31,137,600	20,638,746	62,275,200	62,275,200	3,755,096	3.79%	62,275,200	4,790,400	62,275,200	41,277,494
富의 移 轉效果	1,877,547 (취득원가의 1.90%)						3,755,096 (취득원가의 3.79%)					

리하는 것이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초기에 더 적은 利益(課稅所得)을 계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6 년도에 운용리스로 처리할 경우의 收益은 ₩23,952,000 (운용리스료)이고 費用은 ₩27,720,000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計上될 利益은 (-)₩3,768,000 이다. 그러나 금융리스로 처리할 경우의 收益은 ₩13,233,796 (금융리스이자)이지만 費用은 없다. 이러한 결과로 리스회사의 경우 운용리스로 처리하는 것이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납부할 법인세의 現在價値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리하다.

이러한 계산결과로 나타나는 法人稅移延效果의 現在價値 ₩2,800,735 은 取得原價 ₩99,000,000 의 2.83%에 해당하며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회사에 대한 富의 移轉效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效果는 法人稅率이 높을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 비교표(III)에서 알 수 있다.

만약 위의 리스거래를 金融리스로 회계처리할 수 있고 리스이용자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리스物件이라면 리스이용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해 국산기계의 경우 취득원가의 1%, 외국산기계의 경우 3%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다면 리스이용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회사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리스회사는 금융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분류기준을 강화하면 리스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줄어들고 그만큼 리스이용자로부터 정부에 富가 移轉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리스거래를 運用리스로 회계처리하도록 유도한 것은 基準制定代理機關이 리스회사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구용역단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리스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응답한 8개의 리스회사중에서 6개 리스회사가 금융리스방식을 채택하면 정율법상자에 의한 세무상의 혜택을 상실한다고 주장하고 그 대책으로 리스분류기준의 강화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리스산업의 주장이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²⁷⁾ 만약 그렇다면 利害關係者사이의 利害調整機能을 담당할 基準制定이라는 당초의 제정방향이 왜곡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7) 연구용역단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정율법으로 상각한다면 손익을 지나치게 歪曲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한정하였다. (三逸·棟映會計法人, 前掲報告書 p.118). 그러나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액법뿐만 아니라 정율법도 인정하고 있다 (리스회계처리기준 제5조 제3항).

(3) 誘因시스템모델의 적용을 위한 資料

리스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단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8)

“본 용역단은 용역업무 수행중, 용역의뢰단이 제공한 성실한 협조와 귀중한 조언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용역의뢰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본 보고서는 현재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간사회사로서의 온갖 불편을 무릅쓰고 충실히 도와주신 한불종합금융(주)의 관계제위께 감사를 드린다. 본 용역단은 금번 용역을 계기로 용역의뢰단과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어 앞으로의 용역의뢰단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하며 본 용역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기꺼이 상담에 응할 것임을 부기해 두는 바이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리스산업이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연구용역단에게 제공함으로써 規制者 報償, 특히 友誼의 증대, 便宜의 제공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용역단은 未來職務, 예를 들면 리스회사에 대한 회계분야의 顧問, 外監法에 의한 監査業務 受任등에 대한 관심도 간접적으로 表現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리스업무의 복잡성, 우리나라 리스업무의 특수성등에 기인한 정보의 복잡성, 정보충돌에 따른 情報의 産業統制도 있음직하다. 그리하여 리스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 및 그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리스산업과 연구용역단의 共同認識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포획素因의 발생과 포획행위의 가능성을 示唆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論理의 전개를 위해서 는 보다 합리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V. 結 論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信賴할 수 없거나 誤導할 가능성이 있는 情報을 配布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害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害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會計基準을 제정함으로써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결과를 얻거나 특

28) 三逸會計法人·棟映會計法人, 前掲報告書, p.11.

정 행동양식을 유도하려는 偏倚가 會計基準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害가 되는 것이다. 리스회계처리기준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리스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리스회계처리기준은 리스산업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中立性を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준 제정대리기관은 基準의 제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고 검토해야 한다.

經濟規制理論을 적용하여 리스회계처리기준의 中立性を 검토한 결과 中立性を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몇가지 증거가 발견되었다. 즉 리스회계처리기준은 리스거래를 가능한 運用리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리스분류기준을 엄격하게 規定함으로써 규제대리기관의 설립당시의 목적이 歪曲되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리스회계처리기준은 리스거래의 特性과 經濟的 實質을 적정히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利害調整機能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리스산업과 규제대리기관의 상호작용에 따른 리스산업의 요구수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規制者에 대한 포획행위에 대해서는 誘因시스템모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規制者의 배경, 規制者報償, 규제대리기관의 자원등에 관한 정보의 획득이 필요하게 된다.

參 考 文 獻

1.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84.
2. 金星基, 現代中級會計, 茶山出版社, 1985.
3. 閔丙國, “리스會社의 瑕疵擔保責任(上)”, 法律新聞, 1984.9.24.
4. 鄭熙喆, “리스契約에 관한 研究”, 法學 (서울大學校), 제 20 권 제 2 호 (1980).
5.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2-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May. 1980.
6. _____,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
Accounting for Leases, November 1976.
7. Hendrikses, Eldon S., *Accounting Theory*, Richard D. Irwin Inc.,
1982.
8. Mitnick, Barry M.,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0.
9. Posner, Richard A., *Economic Analysis of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10. _____,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Autumn 1974.
11. _____, and Kenneth E. Scott, *Economics of Corporation
Law and Securities Regula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12. Williamson, Oliver E., Michael L. Wachter and Jeffrey E. Harris,
"Understanding the Employment Relation: The Analysis of
Idiosyncratic Exchange", *Bell Journal of Economics*
(Spring 1975).
13. 三逸會計法人·棟映會計法人, 리스會計處理基準의 制定에 관한 研究報告書, 1983.7.